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27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미화 · 윤준병 · 양문석
이연희 · 이정문 · 박홍배
박용갑 · 차지호 · 이용선
이학영 · 이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소에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장기기증 등을 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로 하여금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을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위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기증자가 뇌사자”를 “기증자가 뇌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를 “뇌사나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될 때”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판정”을 “판정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고)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뇌사추정자”를 “뇌사추정자 또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뇌사자”를 “뇌사자 또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뇌사판정대상자”를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

행 대상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제53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나 제16조제4항에 따른 뇌사판정기관의 장(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제15조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① ----- ----- ----- ----- -----. <u>기증자가 뇌사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사람</u>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본인이 <u>뇌사</u> 또는 사망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① ---- <u>뇌사나 사망할 때</u>

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절 뇌사의 판정

<신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사추정자 및 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될 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절 뇌사의 판정 등

제17조의2(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고)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담당의사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뇌사

사판정대상자의 파악과 관리,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 절차의 진행 지원,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장기등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장기구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뇌사추정자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등 장기구득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장기등 기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뇌사자의 가족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장기등 기증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3. (생략)

④ (생략)

판정대상자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기기증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1. 뇌사추정자 또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2. -----

----뇌사자 또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장기구득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⑧ (생략)

<신설>

<신설>

⑤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

-----.

⑥ -----

-----뇌사판정대상자와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
-----.

⑦·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시각)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사망 시각은 자발적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후 5분이 경과한 시각으로 한다.

제27조의2(연명의료 담당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생략)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신설>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따른 담당의사는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3(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현행 제27조의2와 같음)

제48조(벌칙)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장기기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의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수술에 참여한 자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

3. ~ 5. (생략) ③ · ④ (생략)	<u>한 자</u>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